
2015년도 제31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2014. 12.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목 차

① 면허(자격)증 발급 근거	1
② 면허(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1
③ 면허(자격)증 발급 절차	2
④ 제출 서류	2
⑤ 유의사항	7

<참고>

- ① 졸업탈락자 조치 방법
- ② 졸업유예자 조치 방법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면허(자격)증 발급 처리일자 단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 서비스는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이 집중하는 시기인 2~3월에 면허(자격)증 발급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단축하여 면허(자격)증을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자격)증 발급 안내에 대한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방문하여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상담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면허(자격)증 발급 근거

○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음.

정신질환자 관련법 위반 수형중인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직 종	관련 법령
의무기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발급 신청 :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함.

직 종	관련 법령
의무기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면허(자격)증 교부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직 종	관련 법령
의무기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② 면허(자격)증 발급 관련 기관

구분	기관 명	업무 내용
▣ 응시결격사유 조회	시·구·읍·면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실 여부 ✓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 관련 서류 검토	국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자격)증 발급신청자 확인(면허발급신청서) ✓ 졸업 여부 확인(졸업증명서)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여부 확인(의사진단서) ✓ 교과목 이수 확인(성적증명서, 이수증명서)
▣ 면허(자격)증 발급 승인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시원의 승인요청 후 승인
▣ 면허(자격)증 발송	국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자격)증 출력 및 등기우편 발송
▣ 면허(자격)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급 후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③ 면허(자격)증 발급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합격자 개인이 직접 로그인

○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출력

- 면허(자격)증 수령 주소로 등기우편이 발송되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면허(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발송

○ 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배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 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면허(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발송
- 국시원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 가능(09:00~18:00)

○ 면허(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 검토

- 서류 미비, 부적합한 서류 등의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 보류
- 결격사유 조회 완료, 서류검토 완료가 되면 면허(자격)증 발급 진행

○ 면허(자격)증 발급

- 등기우편 발송, 방문 수령 가능(신청자에 한함)

④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직종 및 응시자격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이수 증명서	성적 증명서	종사 증명서	기타
의무기록사	○	○	○	○	○		

서류 1 면허(자격)교부신청서

- 제출 대상
 - 전 직종 면허(자격)증 발급 대상자
- 발급 및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발급]-[면허·자격 신청서 작성]작성 후 출력
- 주의사항
 - 면허(자격)교부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서류 2 졸업증명서

- 제출 대상
 - 전 직종 면허(자격)증 발급 대상자
- 발급 및 서식
 - 대학 홈페이지, 대학 내 발급센터, 민원 24(<http://www.minwon.go.kr>)
- 주의사항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능
 - 졸업예정증명서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면허 신청 가능)
 - 단, 위생사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

서류 3 의사진단서

- 제출 대상
 - 전 직종 면허(자격)증 발급 대상자
- 발급 및 서식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주의사항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신청자), 검사내용·소견, 진단일, 의료기관명, 성명·면허번호(의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진단일이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난 경우 불인정
- 사본 불인정

※ 의사 진단서를 통해 확인하는 결격사유

직 종	결격사유
의무기록사	1. 정신질환자(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진단서 문구 예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서류 4 개인정보(정정)요구서

- 제출 대상
 - 인적사항(사진, 이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발급 및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해당직종]-[서식모음]
- 주의사항
 - 사진 교체 : 청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 1매를 제출(우편 가능)
 - 이름 변경 : 청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제출(우편 가능)

서류 5 기본증명서

- 제출 대상
 - 원서접수 시 등록기준지를 잘못 작성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기본증명

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

[국시원] 응시원서에 작성한 등록기준지가 맞지 않아 결격사유 조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월 ○일까지 메일(mw@kuksiwon.or.kr) 또는 우편으로 발송바랍니다.

○ 발급 및 서식

-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 주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가 안 되면 면허(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함.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서류와 함께 동봉하면 먼저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때 면허(자격)증 발급 절차 진행(5일 정도 추가 소요)
- **제출방법 : 우편 발송, 스캔(촬영) 후 메일전송(mw@kuksiwon.or.kr), 방문 제출**

서류 6 교과목 이수증명서

○ 제출 대상

대상자	서식 명
▪ 의무기록사 면허증 발급 신청자	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증명서

○ 발급 및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해당직종]-[서식모음]

○ 주의사항

- 과목명, 이수학기 등 본인의 성적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미이수(F)학점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아야 함

서류 7 성적증명서

○ 제출 대상

- 영양사, 의지·보조기 기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발생하는 자

○ 발급 및 서식

- 대학 홈페이지, 대학 내 발급센터

○ 주의사항

- 교과목이수증명서에 작성한 과목을 형광펜으로 체크하여야 함
- 직종별 확인 사항(이수 구분, 입학년도 등)의 기재 여부 확인
- F학점은 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본 불인정

서류 8 외국국적자 추가 서류

○ 제출 대상

- 외국 국적자

○ 발급 및 서식

국가	관련 서류명	내용	발급처
네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네팔 내무부 경찰국
뉴질랜드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타이페이 대사관
독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독일 연방 법무부
러시아	신원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러시아 연방 내무부
말레이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브라질 사법부 (해당 지역 연방 일급 법원)
스위스	범죄기록부	범죄기록 사실유무	스위스 연방 정부
아르헨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오스트리아	신원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우즈베키스 탄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 · 파산선고 사실유무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파라과이	범죄기록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경찰청
피지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피지 경찰청
필리핀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
호주	진술공증서	① 한정치산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호주 대사관

○ 주의사항

- 원본 제출

⑤ 유의사항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야 함.

우편물의 도착 여부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1일 우편물 접수량이 많아 유선 확인은 불가능함)

서류접수 및 면허(자격)증 발급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는 국시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함.

등록기준지를 잘못 작성하여 결격사유 조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면허(자격)증 발급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1주일 이상 지연됨. 등록기준지를 잘못 기재하여 기본증명서를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빨리 보내야함.

면허(자격)증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면허(자격)증 수령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면허(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됨.

학교에서 단체로 면허(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모든 서류는 개인별로 첨부하여야 함.

참 고

① 졸업탈락자 조치 방법

- 2015년 2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되지 않거나 해당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국시원에 졸업 탈락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가 없으면 면허발급이 안됨. 설사 추후 졸업요건이 발생하여 면허발급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졸업시점을 확인하여 합격 취소함. 단, 위생사 합격자 중 4년제 대학 중 2년을 수료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만약, 합격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 즉 합격자 상태로 유지된다면 다음해 응시원서 접수가 안 됨. 그렇기 때문에 졸업사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즉시 국시원에 졸업탈락자 명단을 보내야 함(※ 불합격자는 발송하지 않아도 무관).

졸업탈락 공문 접수



사실 확인



합격취소 처분

- 졸업탈락 조치를 위한 발송 공문의 예

수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경영지원국장)

제목 : ○○○○년도 ○○대학교 ○○학과 졸업탈락자 명단 제출

다음과 같이 졸업탈락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학과	생년월일	이름	비고
○○학과	910101-1	홍길동	졸업시험 탈락
○○학과	910205-2	성춘향	졸업시험 탈락

- 공문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응시자의 정보는 최소화하되 동명이인으로 인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 대학장 또는 대학 총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사전에 해당 응시자에게 졸업탈락 등을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출하여야 함.

② 졸업유예자 조치 방법

- 국가시험 합격자 중 2015년 2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함.
- 단, 2015년 2월말 이전에 졸업 요건(학위등록 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공문이 접수되어야 함



- 졸업유예자 조치를 위한 발송 공문의 예

수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경영지원국장)

제목 : ○○○○년도 제○○회 ○○○○ 국가시험 졸업 유예자 송부

○○○○년 ○○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 유예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인적사항

학과	성명	생년월일	비고
_____학과	홍길동	1988. 01. 01.	

나. 위 학생은 2015년 2월 졸업예정 시기에 해당 전공졸업에 필요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으로 인하여 2014년 8월에 졸업할 예정이오니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졸업사정표, 관련 학칙 또는 편람, 성적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

- ※ 유의사항 : 전공졸업에 필요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졸업유예를 위하여 과목 미이수 또는 과목 포기 등을 하면 졸업 유예 요건이 안 됨.